

南北經濟會談(1984-1985) 結果報告(綜合)

1993. 9.

統 一 院
(南北會談事務局)

목 차

1. 제 1 차 남북경제회담 결과보고('84. 11. 15) 3
2. 제 2 차 남북경제회담 결과보고('85. 5. 17) 23
3. 제 3 차 남북경제회담 결과보고('85. 6. 20) 39
4. 제 4 차 남북경제회담 결과보고('85. 9. 18) 49
5. 제 5 차 남북경제회담 결과보고('85. 11. 20) 57

제1차 남북경제회담 결과보고

1984. 11. 15.

1. 일반사항

가. 일 시 : 1984년 11월 15일 (목) 10:00 - 12:35

나. 장 소 :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

다. 참석자

우 리 측	북 측
<p>수석대표: 김기환 (해외협력위원회 기획단장)</p> <p>대표: 차상필 (상공부 제2차관보)</p> <p>구본태 (국토통일원 연구부장)</p> <p>신봉식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이사)</p> <p>김인준 (대한상공회의소 전무이사)</p> <p>노진식 (한국무역협회 전무이사)</p> <p>임병석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상임이사)</p> <p>수행원: 이형발, 한수웅, 윤 영</p>	<p>단장: 이성록 (무역부 부부장)</p> <p>대표: 계형명 (채취공업위원회 참사)</p> <p>백준혁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 상부위원)</p> <p>허향찬 (조선대외무역협조총회사 부사장)</p> <p>이진식 (금속공업부 국장)</p> <p>손종철 (무역경제연구소 부소장)</p> <p>김해룡 (조선광명연합회사 부사장)</p> <p>수행원: 김광수 외 5명</p>

2. 회의내용

가. 쌍방발언 요지

1) 우리측 기조발언

- 우리는 하루빨리 교류와 협력을 통해 민족적 유대를 회복해야 한다는 일념에서 귀측과의 대화를 꾸준히 추구해 왔음. 특히 금년 8월 20일 귀측에 대하여 남북간의 교역과 경제협력을 통해 민족의 공동번영을 모색해 나갈 것을 제의한 바 있으며, 또한 지난 10월 10일에는 남북경 제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한 바 있음.
- 이러한 우리측의 일련의 조치들은 모두가 남과 북의 동포들 사이에 경 제회담에서 상부상조하는 길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온 겨레가 염원하는 조국통일을 조금이라도 앞당겨 보자는 데에 그 참뜻이 있는 것임.
- 우리는 처음으로 쌍방의 정부당국과 경제단체 대표들이 참가하는 이 회담이 잘 진행되어 남북간에 교역과 경제협력이 실현될 수만 있다면, 이는 남과 북의 동포들의 생활에 직접 보탬이 되는 것은 물론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신뢰조성 그리고 민족화합을 도모하는 데에도 적지않게 기여 하리라고 믿고 있음.
- 지금 남북경제회담을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은 아직도 지난해의 「버마사 건」의 충격속에서 비통한 마음을 가누지 못하고 있음.

- 남북간에 신뢰를 조성하고 화합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서는 온 세계가 규탄하고 있는 이러한 「테러」행위는 두번 다시 되풀이 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임.
- 우리는 남북간에 물자교역을 실시하여 경제적 유대를 넓혀 나가고 이어서 사회·문화분야에서도 회담을 갖고 상호협력의 기반을 튼튼히 다져나가야 할 것임.
- 남북간의 교역은 오랫동안 하나의 경제단위를 유지해 왔던 같은 민족간의 교역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의 무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유리한 점이 많이 있음.
- 같은 민족으로서 서로 필요한 것을 주고 받음으로써 민족공동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수송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시간과 경비면에서 절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 제반거래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더욱 많은 이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2) 북측 기조발언

- 얼마전 수재민 구제물자 제공조치 실현은 민족단합과 긴장완화를 위한 획기적 사변임.
- 40년만에 처음으로 혈육의 정을 나눈 사건을 계기로 북과 남의 합작과 교류를 통하여 민족과 인류의 기대에 부응해서 본 회담이 마련된 것은 다행이고 민족적 경사이며, 경제분야에서의 합작과 교류는 남북관계 개선·통일조국건설에 큰 의의를 갖는 것임.

- 우리나라에는 자연부존자원이 많음.
 금·은·동·아연·철 등의 지하자원이 가득하며 바다에는 많은 고기떼가 득실거림. 풍부한 자연부존자원을 잘 개발·이용하면 통일경제를 건설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임.
- 70년대 북과 남사이의 고위회담에서 김일성은 최규하, 장기영, 이후락 등에게 경제분야의 합작·교류 실현방안을 천명한 바 있고 이를 구체화해서 많은 제안을 내놓았으며, 이때부터 이것이 실현되었다면 남북관계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을 것임.
- 경제분야에서 합작과 교류는 통일의 앞길에 밝은 전망을 줄 것이며 경제인들이 상호 왕래하고 자원을 공동으로 개발하며 물자교역을 활발히 진행한다면 불신과 오해도 풀리고 신뢰도 회복하며 통일도 촉진될 것임.
- 지난 기간 각종 회담이 있었지만 경제회담은 처음임.
 과거 회담의 실패를 교훈삼아 새로 출발한 이 회담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것임.
- 우리는 역사와 민족앞에 지닌 사명으로 성실성과 인내성을 가지고 이 회담을 성공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인민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어야 할 것임.
- 쌍방은 상호 다른 체제하에서 서로 다른 방법으로 경제건설을 진행하고 있으며 생산, 분배, 소유 등 서로 다른 방법과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이런 현실은 애로와 복잡성을 초래하겠지만 이를 극복해서 원만히 해나가자면 쌍방이 지켜야 할 다음과 같은 원칙이 있어야 함.
 첫째, 쌍방이 모든 문제를 토의·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주·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이라는 조국통일 3대원칙에 기초해야 함.

둘째, 쌍방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원칙을 지켜야 함.

세째, 호상성의 원칙을 견지해 나가야 함.

나. 쌍방제안 내용

우 리 측	북 측
<p>회담의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간에 교역을 실시하는 문제 ○ 남북간에 경제협력을 실시하는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과 남사이의 경제분야에서 합작과 교류를 실현할데 대하여」
<p>회담운영·절차문제</p> <p>(회담 공개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회담은 공개로 함. ○ 차기회담부터는 효율적인 회담진행을 위해 원칙적으로 비공개회의를 희망함. ○ 쌍방합의 경우 공개도 무방함. <p>(회담장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회담부터 우리측 「평화의 집」과 북측 「판문각」에서 번갈아 개최하기로 함. 	<p>(회담 공개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측제안에 동의함. <p>(회담장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에서 하는 것이 좋겠음. 북과 남의 시설을 번갈아가며 이용하려고 한다면 판문점내에서만 할것이 아니라, 판문점을 벗어나서 개성이나 문산 또는 평양·서울 같은 곳에서 대범하게 하는 것이 좋음.

우 리 측	북 측
<p>(보도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쌍방 각기 편의에 따라 보도토록 함. ○ 합의사항은 공동보도함. <p>(회담기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은 속기, 녹음, 녹화 등 각기 편의에 따라 함. <p>(쌍방 연락수단 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미 가설되어 있는 남북직통전화 회선 중에서 별도 경제회담용 회선을 지정하여 이용함. 	<p>(보도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측제안에 동의함. <p>(회담기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측제안에 동의함 <p>(쌍방 연락수단 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측제안에 동의함.
<p>물자교역 문제</p> <p>(교역품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입희망품목: 무연탄, 철광석, 선철, 연피, 아연피, 규사, 고철 등과 명태; 누에고치, 팔, 옥수수, 피마자 등 농수산물, 기타 한약재 ○ 판매가능품목: 철강 및 제품, 동 및 제품, 알미늄 제품 등, 가정용 및 공업 	<p>물자교류 문제</p> <p>(교류품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희망품목: 철광석, 석탄, 마그네슘, 네사크링카, 일반공작기계, 채취설비 등 공업상품과 명태, 쌀, 강냉이 등 농수산물 ○ 구입희망품목: 철강재, 중석광, 납사, 섬유 등 공업상품과 남해어족,

우 리 측	북 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역이 확대됨에 따라 철도수송이 가능토록 남북간 철도연결 작업도 추진함. ○ 소량 화물은 자동차를 이용하며 이를 위해 판문점에 공동하역장을 설치함. <p>(기타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자교역에 수반되는 통관, 검사, 통신 문제, 사고처리 및 이견조정 문제 등 구체적 사항은 쌍방 협의로 결정함. ○ 이상의 문제를 포함하여 지속적이고 원활한 남북간 교역을 추진하기 위하여 남북관계당국간에 교역협정을 체결하고 이에 수반되는 관련 제반 세부약정을 체결함. <p>경제협력 및 합작투자 문제</p> <p>(공동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이미 20개 시범실천사업을 통해 남북간에 자연자원의 공동개발 및 공동이용, 남북어민들을 위한 공동어로구역 설정 추진 등을 제의한 바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포항, 원산항과 인천항, 포항항을 개방·이용토록 함. <p>경제합작 문제</p> <p>(지하자원 공동개발 및 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쌍방이 자기의 노력, 설비로써 상대 측 광산과 탄광을 이용하는 문제부터 시작할 수 있음. 우리는 철광산, 탄광을 제공하고 귀측은 중석광산, 몰

우 리 측	북 측
<p>(합작투자 및 기술협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간 물자교역을 추진하면서 무연탄, 철광석 등 자원개발, 천연색 텔레비전 수상기, 음향기기 등 가전제품 생산, 폴리에스텔계 등 섬유류 생산, 의약품 및 화장품 생산, 기타 관광 및 해운사업 등 서비스 분야에 대한 합작투자도 가능함. ○ 광범한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자본·기술 및 인적교류가 필요함. <p>경제협력기구 설치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의 물자교역 및 경제협력문제를 협 	<p>리브덴(수연)금속광산 등을 우리측에 제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함.</p> <p>(어업분야의 합작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과 남이 공동어로구역(귀측에서도 제기한바 있는데 개념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실무토의가 있어야 하겠음)을 설정하고 남북의 어민들이 자유로이 물고기를 잡게함. ○ 이와 동시에 새로운 어장을 공동개발, 이용할 수도 있음. ○ 수산합영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음. <p>(농업분야의 합작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쪽 지역의 서해안 간석지를 공동개발하거나 군사분계선에 의해 끊어진 관개망을 다시 연결·이용함. <p>공동협력기구 설치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작·교류의 통일적 조절을 위한 공

우 리 측	북 측
<p>의하며 동 문제를 원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쌍방의 관계당국 및 경제단체 인사들로 구성되는 가칭 「남북 경제협력위원회」설치를 제의함.</p>	<p>동협력기구를 설치해야 함. ○ 쌍방에서 각 5명 정도의 각 부문 경제전문가를 망라해 「북남경제협력위원회」를 발족시킬 것을 제의함.</p>

※ 북한측은 회담시작하기 전에 있는 환담과 회담종료 직전에 행한 발언에서 두차례에 걸쳐 북한의 김환 부총리가 우리측 신병현 부총리와 만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신병현 부총리에게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여 왔으며 부총리가 서로 만난 다음에는 그 이상이 만날수도 있다고 말하였음.

다. 쌍방간 주요쟁점

우 리 측	북 측
<p>(의제문제) ○ 우리측이 의제를 2개항으로 내놓은 것은 첫째, 남북간에 물자교역에 관한 지혜와 방안을 내놓아 교역협정을 체결하고 이에 필요한 세부약정도 체결하자는 것이며, 둘째, 경제협력이라는 것은 교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합</p>	<p>(의제문제) ○ 귀측은 합작을 뒤로 미루자고 그러는데 우리는 교류와 합작을 다하자는 것이며, 귀측이 합작이란 용어가 싫으면 협력으로 하는데 우리는 양보할 것이며, 따라서 합작대신에 협력이라고 하여 의제를 「협력과 교역을 실현할데</p>

우 리 측	북 측
<p>대작투자, 상호 기술이전 그리고 그외 좋은 사업들을 추진하자는 것임.</p> <p>따라서 교역과 협력사업을 별도문제로 인식하는데 불편할 것이 없음.</p> <p>○ 우리는 의제를 단일화하여 「남북간에 물자교역과 여타분야의 경제협력을 실시하는 문제」로 설정하면 좋겠음.</p> <p>○ 지금까지 쌍방은 서로간에 교역과 경제협력을 실시한다는 데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으며, 다만 의제설정에 있어서 교역을 먼저 표기할 것인가 또는 경제협력을 먼저 표기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하고 있음. 귀측이 차후 연구해서 토의하자고 하는 만큼 우리도 귀측 의견대로 다음회의에서 협의하여 결정했으면 좋겠음.</p>	<p>대하여」로 할 수 있음.</p> <p>○ 귀측에서 절충안을 제시했는데 우리는 「여타 분야」라는 말을 빼고 「북남간에 물자교역과 경제협력을 실현할데 대하여」라고 하는 것이 어떨는가?</p> <p>※ 북측 전략단으로부터 「메모」가 전달되자 태도를 바꾸어 「의제문제에 관해서는 쌍방이 서로 의견이 많이 접근되었는데 그러나 나로서는 우리 측 관계자들과 상의할 것도 있으므로 서로 연구해서 다음 회의에서 합의할 것」을 희망하여 왔음.</p>

우 리 측	북 측
<p>(물자교역 및 경제협력 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역은 손쉽게 착수할 수 있고 쌍방에서 조건만 합의하면 내일이라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효과도 빨리 나올 수 있음. ○ 그러나 합작투자를 하여 같이 사업을 하자면 사전조사, 인적왕래 문제, 당국 보장 등 여러가지 조건을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음. ○ 동·서독의 경우를 보더라도 49년부터 교역을 먼저 실시하여 왔으며 작년 총량이 150억마르크에 달함. 그러나 합작투자는 쌍방체제의 차이때문에 금년에 겨우 1건이 이루어졌음. ○ 우리가 교역부터 하자고 해서 적극성이 없는게 아님. 교역도 큰 테두리안에서 협력이니까 선후문제라고 볼 것이 아님. 	<p>(합작·교류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측은 물자교류가 쉽기 때문에 먼저 진행하자고 하면서 합작보다는 교역부터 하자고 하는데, 북과 남사이의 동족, 혈육끼리 무엇이 중요하고 어느 것을 선차적으로 하고 어느 것을 후차적으로 하자고 할 것없이 동시에 둘다 하는 것이 좋겠음. ○ 남에서 철광석, 석탄의 상당량을 멀리서부터 사오고 있는데, 귀측이 철광석, 석탄을 먼 나라에서 사올 것이 아니라 지하자원을 놓고 협력해서 캐간다면 쉬울 것임. ○ 이렇게 합작을 많이해서 힘을 합치면 많은 래왕·접촉이 있고 그러면 오해도 풀릴것이므로 합작이 힘들게 없음.

우 리 측	북 측
<p>(버마사건 문제)</p> <p>○ 우리 국민들은 아직도 지난해의 버마 사건의 충격속에서 비통한 마음을 가누지 못하고 있음.</p> <p>○ 남북간에 신뢰를 조성하고 화합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서는 온 세계가 규탄하고 있는 「테러」행위는 두번 다시 되풀이 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임.</p>	<p>※ 우리측이 기조발언에서 버마사건에 관하여 언급한데 대하여 북측은 즉각적 반박이나 언급이 없다가 회의 종료 직전에 종결발언에서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음.</p> <p>- 한가지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경제외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야기하지 말고 본 회담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만 했으면 좋겠음.</p> <p>- 회담과 관계없는 어떤 사건이야기를 하자면 한정이 없으며 북·남이 오랫동안 회담하는 만큼 지난 전철을 밟지 않고 해나가야 하겠다는 것을 강조함.</p>

3. 쌍방 합의사항

가. 회담공개 여부

- 1차회담은 공개로 하되 차기회담부터는 비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함.
단, 쌍방 합의시는 공개함.

나. 보도문제

- 쌍방 각기 편의에 따라 하되 합의사항은 공동보도토록 함.

다. 회의기록

- 속기, 녹음, 녹화 등 각기 편의대로 기록함.

라. 쌍방 연락수단

- 남북간에 기 가설되어 있는 직통전화회선 중에서 남북경제회담용 회선을
별도 지정하여 사용토록 함.

마. 차기 회담일자 및 장소

- 1984. 12. 5 (수) 10:00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

4. 분석·평가

- 북측은 종전 남북대화에서 취했던 것과는 달리 매우 유연하고 타협적인 자세
를 보임으로써 외관상 남북경제회담을 성사시키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과시하
려 했음.

- 의제토의에 있어 「북과 남사이의 경제분야에서 합작과 교류를 실현할데 대하여」라고 제시하였다가 자진해서 「합작」을 「협력」으로, 「교류」를 「교역」으로 해도 좋다는 타협적 태도를 보여 왔으며,
 - 절차문제에 있어서도 우리측이 차기회담부터 비공개로 하자는 것과 남북간의 경제회담용 직통전화선을 개통하자는 등의 제의에 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동의해 왔음.
- 우리측이 교역에 중점을 둔데 대해서 북측은 교역보다 경제합작에 중점을 두었는 바, 이는 남북교역이 실시될 경우 북한의 경제수준의 상대적 열위가 노정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물자교류에 있어서 북측은 우리측으로부터 구매를 희망하는 상품으로서 철강재, 중석광, 납사, 섬유 등 원자재와 중간재만을 제시하고 일용품과 공업 완제품은 제외하고 있음.
 - 또한 북측은 남북간에 원자재, 완제품, 농수산물을 유무상통하자고 하면서도 물자교류 방법에 있어 원자재는 원자재끼리, 완제품은 완제품끼리, 농수산물은 농수산물끼리 교류하자는 제한적인 조건을 제시하였음.
- 북측이 지하자원의 공동개발을 주장하면서 쌍방이 각각 자기의 노력과 장비로 상대방 지역의 지하자원을 개발할 것과 어장의 공동이용을 제의하면서도 공동어로를 제외시킨 것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이유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광산과 탄광 등을 남북의 노동력을 함께 투입하여 개발하거나 한 배에 동승하여 공동어로작업을 할 경우, 우리측 근로자들과 어부들에게 그들의 사상적 영향력을 가할 수는 있으나 오히려 우리측이 북한 근로자들과 어부들에게 우리 체제와 국민생활의 우월성을 인식시킬 수 있다고 보고 이를 기피하고 있는 점
- 지하자원의 공동개발과 어로작업에 남북한 쌍방의 장비를 사용할 경우, 우리의 산업발전 수준과 기술이 북한의 그것보다 월등하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는 점
- 경제협작에 북한측이 지하자원의 공동개발, 어업분야에서의 협작, 농업분야에서의 간석지 개간을 제외하면서도 제조업 분야에서의 협작사업을 제외시킨 것은 이것 역시 남북의 산업수준과 기술의 차이가 노정될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북한은 우리측에 대한 판매가능 품목으로서 석탄, 철광석, 마그네샤크링카, 일반공작기계, 명태, 쌀, 옥수수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석탄, 철광석, 명태, 옥수수 등은 우리측이 북한으로부터의 구입희망품목으로 제외한 바 있으므로 교역품목에 있어서 상기 4개의 품목은 사실상 남북한간에 합의가 된 것이라 하겠음.
- 북측이 남북 부총리간에 직접 만날것을 제외하고 부총리가 만난 다음 그 이상도 만날수 있다고 말한 것은 남북경제회담에서 제기되는 어려운 문제를 부총리 접촉을 통해서 해결할 뿐만 아니라 경제회담의 성과에 따라 남북총리 회담 또는 남북 최고책임자회담도 열수 있다는 그들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시

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것이 그들의 진의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됨.

- 북측이 제1차 회담에서 보인 유연하고 타협적인 태도와 남북한 부총리간의 접촉을 제의한 점으로 보아 북측은 경제회담을 상당기간 지속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제2차 남북경제회담 결과보고

1985. 5. 17.

1. 일반사항

가. 일 시 : 1985년 5월 17일 (금) 10:00 - 12:03

나. 장 소 :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

다. 참석자

우 리 측	북 측
<p>수석대표: 김기환 (해외협력위원회 기획단장)</p> <p>대표: 임인택 (상공부 제2차관보) 구본태 (국토통일원 연구부장) 신봉식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이사) 김인준 (대한상공회의소 전무이사) 노진식 (한국무역협회 전무이사) 임병석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상임이사)</p> <p>수행원: 손종수, 한수웅, 박봉식</p>	<p>단장: 이성록 (무역부 부부장)</p> <p>대표: 계형명 (채취공업위원회 참사) 한영읍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 상부위원) 허향찬 (조선대외무역협조총회사 부사장) 이진식 (금속공업부 국장) 손종철 (무역경제연구소 부소장) 김해룡 (조선광명연합회사 부사장)</p> <p>수행원: 김광수 외 5명</p>

2. 회의내용

가. 쌍방발언 요지

1) 우리측 기초발언

- 제2차회담이 두차례나 연기되는데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는 또 다시 이같은 일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함.
- 회담의제를 「남북간에 교역과 경제협력을 실시하는 문제」로 합의할 것을 희망함.
- 남북간의 교역과 경제협력문제와 관련하여 쌍방이 내놓은 제안의 공통점을 재확인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함.
- 지난번 1차회담 때에 쌍방이 내놓은 제안 중에서 오늘 우선적으로 토의할 필요가 있는 문제를 제시해 보겠음.

첫째, 이미 쌍방의 의견이 합치된 철광석, 무연탄, 마그네샤크링카, 명태, 옥수수, 철강재, 섬유 등 교역품목에 대해서는 당장 교역을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임.

- 우리측은 올해 안에 남북교역이 시작되기를 희망하면서 교역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당장 귀측으로부터 30만톤의 무연탄을 구입할 것을 제의함.
- 앞으로 우리측은 귀측이 구입하기를 희망한 품목 중 김, 미역, 굴, 멸치 등 남해수산물, 소금, 감귤 등 특산물과 각종 공산품을 판매

할 수 있음.

- 교역방식에 대해서는 원자재나 완제품이나 농수산물이나 구별할 것이 아니라 여러 품목을 포괄하는 구상무역을 실시하고 교역확대에 따라 차차 청산협정방식으로 발전시켜 나아가는 것이 좋을 것임.
- 우리측은 올해안에 경의선 철도가 연결되기를 희망하며 철도연결에 따르는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쌍방 철도실무자간의 접촉을 1개월 이내에 가질 것을 제의함.
- 항구 개발문제에 대해서는 물자교역 개시와 더불어 우리는 인천항과 포항항을 귀측에 개방하고 귀측은 남포항과 원산항을 우리측에게 개방하되 선적항은 판매자가, 하역항은 구매자가 항구를 지정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이므로 쌍방이 편리하다고 합의하게 되면 위의 4개항구 이외의 항구도 개방할 수 있을 것임.

둘째, 경제협력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제1차 회담때에 귀측이 우리측의 중석광산과 몰리브덴광산을 제공할 것을 제의한데 대해 그 대신에 세계적으로 그 품질이 우수하고 매장량도 귀측과 나누어 쓸 수 있을만큼 풍부한 고령토와 규석광산을 귀측에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남북의 어민들을 위해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는 문제에 대하여서는 앞으로 쌍방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고 협의를 진행하면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세째, 남북경제협력위원회 설치문제는 쌍방이 각각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이를 토대로 의견을 조정해 나가면 이것도 원만히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임.

네째, 간석지 개발사업과 관개망 연결사업 같은 것은 우리측의 기술수준, 그리고 공사경험 등을 고려해 볼때 남북의 공동사업으로 추진할만한 것이 못된다고 생각함.

- 우리측은 국내외에서 간석지 개발실적이 많을 뿐 아니라 국제수준의 훈련된 우수한 전문기술자와 장비를 많이 확보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에서 바다 매립공사를 하고 있고 중동, 리비아 등에서는 대규모 관개공사를 하는 등 해외 여러나라에서 토목공사를 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그 기술과 능력을 높이 평가받고 있음.
- 군사분계선에 의해 끊어진 관개망 연결문제는 우리의 관개공사로 농업용수가 이미 해결되었음.

2) 북측 기초발언

- 우리는 북과 남 사이의 합작과 교류문제를 능률적으로 협의·해결하며 경제문제를 통일적으로 지휘·조절할 수 있는 높은 급의 권위있는 협상·이행기구로 쌍방 부총리급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북남경제협조 공동위원회」구성을 제의함.
- 「북남경제협조 공동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음.

《구 성》

가) 공동위원회는 쌍방이 각각 공동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과 위원 7명으로 구성하며 공동위원장은 부총리급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부장(장관)급으로 하며 위원은 부장(장관) 또는 부부장(차관)급으로 함.

나) 공동위원회 안에 다음과 같은 분과위원회를 둬.

- 자원개발분과위원회
- 공업 및 기술분과위원회
- 농업분과위원회
- 수산분과위원회
- 상품교류분과위원회
- 운수 및 체신분과위원회
- 금융재정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은 「북남경제협조 공동위원회」의 위원들로 하며 분과위는 각각 5명 정도로 구성함.

다) 「북남경제협조 공동위원회」안에 각기 사무장을 두며, 사무장은 부부장(차관)급으로 함.

《기 능》

가) 공동위원회의 기능

- ㄱ) 경제협력과 교류의 대상 및 규모를 협의·결정
- ㄴ) 경제협력과 교류의 기본형식과 방법을 협의·결정
- ㄷ) 경제협력과 교류와 관련되는 통일적 계획을 협의·비준
- ㄹ) 공동위원회의 합의사항과 토의·결정된 계획을 실행·보장
- ㅁ) 경제거래기관들간의 분쟁문제를 협의·조절
- ㅂ) 부문별 분과위원회를 지도·운영
- ㅅ) 경제협력과 교류를 실현하며 경제의 통일적인 발전문제와 관련된 기타 문제를 협의·결정

나) 분과위원회의 기능

- ㄱ) 공동위원회에서 토의된 해당 문제를 실무적으로 토의·협의
- ㄴ) 해당부문에서 제기된 문제를 공동위원회에 제기

다) 사무장의 기능

- ㄱ) 분과위의 토의·결정사항을 자기측 공동위원회에 제기
- ㄴ) 공동위 소집준비 및 공동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한 실무적인 문제를 담당·처리

《운 영》

- 가) 공동위원회 회의는 평양과 서울에서 분기에 1회 개최하며 쌍방의 합의에 따라 임시회의도 가짐.
 - 나) 분과위는 쌍방 합의에 따라 서울·평양 또는 판문점에서 수시로 함.
 - 다) 공동위원회의 최종 합의는 쌍방 공동위원장의 서명 또는 구두에 의해 합의함.
 - 라) 공동위원회의 운영세칙은 따로 협의하여 정함.
- 공동위원회가 구성·운영될 때 쌍방의 협력과 교류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원칙과 합작·교류의 기본방법이 규정되어야 하며 북과 남이 합작과 교류를 원만히 추진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시함.
- 가) 공동위원회는 북남 사이의 합작과 교류에 관련된 제반 문제의 실행을 보장하는 전 과정에서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을 존중하고 그에 기초하여 민족이익과 조국통일에 기여해야 함.
 - 나) 공동위원회는 쌍방간에 경제제도와 시책이 다른 실정에서 호상 상대방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함.
 - 다) 공동위원회는 호상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쌍방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제관계를 발전시켜야 함.

○ 공동위원회는 이 원칙에서 합작과 교류를 다음과 같은 방향과 방법으로 실현해야 함.

- 합작은 민족경제의 통일적 발전과 공동번영에서 필수적이고 절실한 분야부터 실행하며, 자연부존 공동개발·이용부터 시작하여 차차 확대함.
- 합작방법은 서로 제도와 경제정책, 경영방법의 차이를 고려하여 상대측 지역에서 자기의 기술·설비·노력·자금을 가지고 단독 경영하는 합작 형태를 위주로 하고 여러가지 합작형태를 배합함.
- 합작은 대상별로 각기 1,500만 「스위스 프랑」(미화 555만불) 이상의 규모에 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합작실시 경우에 있어서 특혜를 보장함.
이와 관련 기업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관세 등을 면제하며, 토지이용세, 자원세 등은 제품생산후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개발기간중 전기사용료, 물세 등과 같은 것은 경우에 따라 대부분 형태로 납기기일을 연장함.
- 합작대상에 필요한 자재·설비와 운용물자는 무제한 납입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해당지역에서 생산되는 물자는 관계기관을 통해 우선적으로 보장받도록 함.
- 합작회사의 조직·운영·편의보장 등 합작에서 제기되는 기타문제는 합작 당사자간의 계약에서 확정하며, 쌍방의 법기관은 이를 법적으로 보장함.

- 물자교류 품목은 쌍방이 제기한 품목 중에서 호상성과 유무상통의 원칙에 따라 정함.
 - 교류량은 품목합의후 결정함.
 - 물자교류는 청산결제방식으로 함.
 - 결제업무는 쌍방이 지정하는 북남 은행이 직접담당함.
 - 결제통화는 「스위스 프랑」으로 함.
 - 교류물품 가격은 국제시장 가격을 고려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결정함.
 - 교류물자는 관세를 면제함.
 - 북남 합작과 교류에 필요한 수송은 철도, 배, 자동차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해당지점까지 직송하도록 함.
 - 북남 합작과 교류 실현도 합작대상과 교류품목에 따라 해당 기관이 직접 담당하도록 함.
 - 합작과 교류에 대한 전반적 합의후 이의 실현을 위한 합의서를 작성·채택함.
- 이 회담에서 우리의 제안을 진지하게 협의하여 「북남경제협조 공동위원회」제1차 회의를 오는 9월에 평양에서 열자는 것을 제기함.

나. 쌍방제안 내용

우 리 측	북 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회의시 합의하지 못하였던 의제문제를 토의하는 것이 순서임. 의제는 지난번 거의 합의되었는데 이의가 없으면 「남북간에 교역과 경제협력을 실시하는 문제」로 합의했으면 함. ○ 일은 순서가 있는데 하나하나 해결해서 남북간에 유대를 회복해야 함. 우리측은 기구설립을 안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토의를 하였던 의제문제를 종결짓자는 것임. 의제문제를 종결한 다음에 공통사항을 토의하는 것이 좋을 것임. ○ 우리가 큰 일을 하는데 누구나 다 원대한 목적이 있으나 처음부터 크게 욕심을 내서는 안되며 단계를 올라가듯이 한 단계씩 차분히 진행해야 함. 그래서 구체적인 거래같은 것을 토의하고, 무연탄도 시작이 반이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받게 되고 그런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하자는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제문제는 1차회담에서 기본상 합의된 것으로 간단히 토의하면 될것이기 때문에 「북남경제협조 공동위원회」가 탄생되면 그때 토론하면 됨. 중요한 것은 「북남경제협조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임. ○ 귀측의 철도연결은 우리도 제기한 것인데 올해안으로 하자는 것도 철도장관이 앉고 실무자가 만나면 금방 됨. 당사자가 직접 앉아 분과위원회를 열어 해결하자는 것임. ○ 이 회담을 제기할때 합작교류를 폭넓고 통을 크게 벌려 유대를 회복하고 신뢰를 조성하여 자주적·평화적 통일일의 디딤돌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지 몇가지 교역이나 하자고 한것은 아님.

우 리 측	북 측
<p>○ 귀측이 큰 집에서 하자는데 집도 용도에 따라 지어야 하며 무턱대고 큰집을 만들 수는 없음. 지난번 우리는 경제협력기구의 필요성도 이야기했음. 그러나 그것을 미루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부터 토의하고 나서 거기에 알맞는 기구를 구성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남이 보기에 일을 하자는 것인지만 이유가 있는지 오해받기 쉬울 것임.</p> <p>○ 우리가 하는 경제회담을 9월까지 안하겠다는 것인가?</p> <p>○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음. 귀측이 제의한 기구도 1차회담때 우리가 제의한 바</p>	<p>○ 「북남경제협조 공동위원회」의 합리성을 다시 설명하겠음.</p> <p>- 「북남경제협조 공동위원회」의 사명은 합의하는 기능과 실천하는 기능을 결합하고 있음.</p> <p>- 「북남경제협조 공동위원회」 운영은 쌍방이 통일적인 경제발전지향의 견지에서 합리적임. 「북남경제협조 공동위원회」회의를 평양과 서울을 왔다갔다 진행하면 화해분위기도 조성하고 불신을 해소하며, 대결과 긴장도 가셔지게 할 것임. 이런 점에서 「북남경제협조 공동위원회」가 민족단합의 선구자적 역할을 수행하고, 나아가 통일기반조성의 큰 주춧돌이 될 것임.</p> <p>○ 분과위원회를 내일부터라도 발족하면 효과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음. 무연탄 30만톤인지 300만톤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직접 분과위원회에서 토의하고 철도연결도 분과위원회에서 하고</p>

우 리 측	북 측
<p>있고 의제와 교역품목 등 공통점이 많았으니 그런 구슬을 하나씩 꿰매는 것에 오늘 회담의 초점을 맞추자는 것임.</p> <p>○ 지난번의 이야기를 끝도 안내고 다른 것을 하자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움. 의제 문제를 비롯하여 서로 이미 내놓은 것에 대해 토의를 하자는 것임.</p> <p>○ 9월에 「남북경제협조 공동위원회」 회의를 하자는데 그 이전이라도 우리가 내놓은 구슬은 진전시키고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 의견을 내놓고 기구문제를 검토해보는 것이 어떤가?</p> <p>○ 귀측의 「남북경제협조 공동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의에 대해서는 연구하여 다음 회담때에 우리 입장을 밝히겠음.</p>	<p>이렇게 빨리 하자는 것임.</p> <p>○ 9월까지 안하겠다고는 것이 아니고 회담은 계속해야함.</p>

3. 쌍방 합의사항

○ 차기회담 일자 및 장소

- 일 시 : 1985년 6월 20일 (목) 10:00
- 장 소 :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

4. 분석·평가

○ 북측이 제1차회담에서의 태도를 돌변하여 의제, 교역 및 경제협력방안 토의를 외면하고 오로지 「남북경제협조 공동위원회」의 설치만을 주장한 것은 현재의 남북경제회담을 「남북경제협조 공동위원회」로 사실상 대체하자는 것인 바 그 의도와 배경은 다음과 같이 판단됨.

- 산업발달수준에 있어 우리가 북한보다 월등하게 앞서 있어서 남북교역과 협력이 실천에 옮겨질 경우, 북한체제의 상대적 열위와 미약성을 노정하게 되어 정치적 손익계산에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형식적으로는 회담을 진행시키되 실질적인 회담의 진전은 가능한 한 늦추어 보려는 점.

※ 북측은 1차회담에서 교역과 경제협력이 1-2년내에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한 바 있음.

- 남북간에 교역품목이 확정되고 교역의 실시가 기정사실화되면 우리와 중공간의 무역확대 내지 양국의 정치적 접근을 촉진시키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점.

- 북측이 차관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경제회담을 부총리급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협의기구로 격상시킬 것을 주장한 것은 물자교역과 경제협력 등 실무적인 회담진행보다는 대내외적으로 남북간에 경제협력과 통일문제에 대해서 그들의 자세가 적극적인 것처럼 과시해 보이려는 것임.
- 이상과 같은 북측의 의도 및 태도로 보아, 북측은 앞으로도 물자교역과 경제협력 등 실질문제 토의를 외면하고 「남북경제협조 공동위원회」 설치문제와 경제합작의 당위성을 고집할 것으로 예상됨.

제3차 남북경제회담 결과보고

1985. 6. 20.

1. 일반사항

가. 일 시 : 1985년 6월 20일 (목) 10:00 - 11:37

나. 장 소 :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

다. 참석자

우 리 측	북 측
<p>수석대표: 김기환 (해외협력위원회 기획단장)</p> <p>대표: 임인택 (상공부 제2차관보) 구본태 (국토통일원 연구부장) 신봉식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이사) 김인준 (대한상공회의소 전무이사) 노진식 (한국무역협회 전무이사) 임병석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상임이사)</p> <p>수행원: 손종수, 한수웅, 박봉식</p>	<p>단장: 이성록 (무역부 부부장)</p> <p>대표: 계형명 (채취공업위원회 참사) 한영읍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 상무위원) 허항찬 (조선대외무역협조총회사 부사장) 이진식 (금속공업부 국장) 손종철 (무역경제연구소 부소장) 김해룡 (조선광명연합회사 부사장)</p> <p>수행원: 김광수 외 5명</p>

2. 회의내용

가. 쌍방발언 요지

1) 우리측 기초발언

- 남북간의 물자교역 및 경제협력사업 추진과 쌍방 부총리급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남북경제협력 공동위원회」를 발족시키기 위한 합의서 채택을 제의함.
- 무연탄 30만톤 구입문제와 경의선 연결을 협의하기 위한 쌍방 실무접촉 제의에 대한 북측의 긍정적인 의견 제시를 요구함.

< 「남북간 물자교역 및 경제협력추진과 남북경제협력 공동위원회 설치에 관한 합의서」의 주요내용 >

《물자교역 방안》

- 물자교역은 우선 다음 품목으로 시작하며 쌍방합의에 따라 다른 품목으로 확대함.
 - 남측이 판매할 품목: 철강재, 섬유, 소금, 감귤, 남해수산물 (김, 미역, 굴, 멸치)
 - 북측이 판매할 품목: 무연탄, 철광석, 마그네샤크링카, 명태, 옥수수
- 교역품목의 가격은 국제시장가격을 고려하여 교역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 교역물품의 수송은 교역물품의 특성, 중량, 운송비 등을 감안하여 교역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 물품의 통관, 검사, 사고처리 등은 대외거래에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함.
- 관세는 부과하지 아니함.

《경제협력사업방안》

- 경제협력사업은 우선 다음 사업으로 시작하며, 쌍방합의에 따라 다른 사업으로 확대함.
 - 공동어로구역 설정사업
 - 지하자원 공동개발사업
- 사업의 규모, 실시방법 및 조건, 실시시기 등은 사업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함.
- 쌍방이 합의할 경우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등 기타 조세부담을 감면함.

《남북경제협력 공동위원회 구성(안)》

- 「공동위원회」는 쌍방 각기 부총리급 공동위원장 1명, 장관급 부위원장 1명, 장·차관급위원 5명, 도합 각 7명으로 구성함.
- 「공동위원회」안에 물자교역분과위원회와 경제협력분과위원회를 두며 필요시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특별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설치함.
 - 각 분과위원회는 쌍방 각각 5명으로 구성

- 「공동위원회」산하에 실무문제를 관장하는 공동사무국을 판문점에 설치함.

2) 북측 기초발언

- 「북남경제협조 공동위원회」를 내오기 위한 구체적인 토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북남경제협조 공동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합의서」초안을 제시하겠음.

< 「북남경제협조 공동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합의서」 주요내용 >

《구 성》

- 가) 「공동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각 공동위원장, 부위원장 1명과 위원 7명으로 구성하며, 공동위원장은 부총리급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부장(장관)급으로 하며 위원은 부장(장관) 또는 부부장(차관)급으로 함.
- 나) 「공동위원회」안에 자원개발분과위원회, 공업 및 기술분과위원회, 농업분과위원회, 수산분과위원회, 상품교류분과위원회, 운수 및 체신분과위원회, 금융재정분과위원회를 둬.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위원으로 되며 분과위원회는 각각 5명으로 구성함.
- 다) 「공동위원회」안에 각기 부부장(차관)급의 사무장을 둬.

《기 능》

가) 공동위원회

- ㄱ) 경제협력과 교류의 대상과 규모를 협의·결정
- ㄴ) 경제협력과 교류의 기본형식과 방도를 협의·결정
- ㄷ) 경제협력 및 교류와 관련한 통일적인 계획의 협의·비준
- ㄹ) 합의사항과 토의·결정된 계획 실행보장
- ㅁ) 북남 경제거래기관들간의 분쟁문제 협의·조절
- ㅂ) 기타 문제의 협의·결정 및 이행보장

나) 분과위원회

- ㄱ) 「공동위원회」에서 토의·결정된 문제들에 대한 실무적 협의
- ㄴ) 해당부문들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공동위원회」에 제기

다) 사무장

- ㄱ) 「공동위원회」운영과 관련한 실무적 문제를 담당처리하며, 필요시 쌍방 사무장회의 진행
- ㄴ) 분과위원회의 토의·결정사항을 종합, 자기측 「공동위원회」위원 장에게 제기

《운 영》

- 가) 「공동위원회」 본회의는 평양과 서울에서 분기에 1회 진행하며 쌍방의 합의에 따라 임시회의 개최

2) 분과위원회 회의는 합의에 따라 평양과 서울 또는 판문점에서 수시로 개최

3) 「공동위원회」 합의사항은 쌍방 공동위원장들의 서명 또는 구두로 확인

※ 「북남경제협조 공동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칙은 따로 작성하여 합의

3. 쌍방 합의사항

- 북측은 먼저 8월 7일(수)에 제4차회담을 갖자고 제의하였으나 우리측이 9월 18일(수) 갖자고 제의하자 기꺼이 이에 동의하였음.

4. 분석·평가

- 우리측은 남북한 물자교역과 경제협력 실시를 위한 사업추진방안과 기구를 종합적으로 합의하자는 적극적이고 포용적인 자세를 취한 반면, 북측은 제2차회담에서 주장했던 기구구성 문제만을 되풀이 하다가 태도를 바꾸는 소극적이고 일관성 없는 자세를 취함으로써 제3차회담은 우리측 주도에 의해 진행되었음.
- 북측은 당초 현행 경제회담을 부총리급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남북경제협조 공동위원회」로 대체시켜야 한다는 제2차회담때의 입장을 관철시키려는 전략으로 이번 회담에 임하였으나, 우리측이 주장한대로 사업추진 방안과 기구구성을 망라한 합의서 채택에 동의한 것은 북측이 내외여론을 의식, 우리측 제안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부총리급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경제협력기구를 설치하자는 것이 북측의 기본입장이었던 만큼 북측이 다음 회담에서 동 협력기구 설치에 관한 합의를 우선적으로 채택하자고 다시 태도를 바꿀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음.

- 북측이 무연탄 30만톤을 구매하는 문제와 경의선 철도를 조속히 연결시키는 문제를 협의하기위한 실무회의를 갖자는 우리측 제의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한 것은 경제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사업추진을 가능한 한 지연시키려는 그들의 입장에 기인된 것으로 평가됨.
- 앞으로 북측이 급작스러운 변화가 없는 한 제4차회담에서는 제3차회담에서 우리측이 제시한 합의서안에 대한 북측의 대안이 제시되고, 쌍방제안을 토대로 한 합의서 문안작성을 위한 실무회의 개최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됨.

제4차 남북경제회담 결과보고

1985. 9. 18.

1. 일반사항

가. 일 시 : 1985년 9월 18일 (수) 10:00 - 11:55

나. 장 소 :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

다. 참석자

우 리 측	북 측
<p>수석대표: 김기환 (해외협력위원회 기획단장)</p> <p>대표: 임인택 (상공부 제2차관보) 구본대 (국토통일원 연구부장) 신봉식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이사) 김인준 (대한상공회의소 전무이사) 노진식 (한국무역협회 전무이사) 임병석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상임이사)</p> <p>수행원: 손중수, 한수용, 윤 영</p>	<p>단장: 이성록 (무역부 부부장)</p> <p>대표: 계형명 (채취공업위원회 참사) 한영읍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 상무위원) 허항찬 (조선대외무역협조총회사 부사장) 이진식 (금속공업부 국장) 손종철 (무역경제연구소 부소장) 김해룡 (조선광명연합회사 부사장)</p> <p>수행원: 김광수 외 5명</p>

2. 회의내용

가. 우리측 제안에 북측이 접근해 온 사항

○ 물자교류, 경제협력, 공동기구 설치에 관한 일괄적인 합의서 채택에 동의

○ 왕래 인원의 편의제공 및 신변안전보장에 동의

○ 남북경제협력공동위 산하에 공동사무국 설치에 동의

※ 북측은 판문점내에 공동사무국을 건설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불필요하다고 거부

○ 쌍방 수석대표(단장)의 서명·발효에 동의

※ 3차회담시 북측은 최종문건에 쌍방 부총리의 서명을 효력발생 조항으로 제시

○ 합의서 발효후 1개월 이내 공동위원회, 분과위원회, 공동사무국 발족에 동의

나. 차이점

구 분	우 리 측 안	북 측 안
원칙표기문제	순수 경제원칙에 국한	조국통일 3원칙 삽입
교류품목	1,2차 회담시 합의품목을 합의서에 명기하고 합의품목부터 교류시작	1차 회담시 쌍방 제안품목을 고려하여 공동위에서 협의·결정

구 분	우 리 측 안	북 측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측 판매가능 품목: 철강재, 섬유, 소금, 감귤, 남해수산물 (김, 미역, 굴, 멸치 등) - 북측 판매가능 품목: 무연탄, 철광석, 마그네사크링카, 명태, 옥수수 	
거래방식	청산결제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잠정적으로 제3국은행 신용장 방식적용	청산결제 방식
결제업무 취급 은행	쌍방이 지정하는 남북한 은행으로 하되 잠정적으로 제3국은행 이용	쌍방이 지정하는 남북한의 은행
협력사업 규모, 방법, 시기 등	사업 당사자가 결정	공동위원회에서 협의·결정
분과위원회 수	2개분과(물자교류·경제협력) ※ 필요시 특별분과, 소위원회 설치	6개분과(자원개발·공업 및 기술·농업 및 수산·상품교류·운수 및 체신·금융재정)

3. 쌍방 합의사항

○ 차기회담 일자 및 장소

- 일 시 : 1985년 11월 20일(수) 10:00

- 장 소 :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

※ 북측은 판문점 북측지역에 신축한 「통일각」에서 5차 회담을 개최하고자 제의하였음.

4. 분석·평가

○ 북측은 제3차 회담에서 우리측이 요구한데 따라

- 경제협력기구 구성과 경제협력 및 물자교류안을 일괄한 하나의 합의서안을 제시했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우리측 안을 부분적으로 수용했음.

- 그러나 북측은 교류품목, 경제협력 대상·규모·방법·기간 등 사업실시와 관련된 사항들을 공동위원회에서 협의·결정하자고 함으로써 공동위원회 구성을 우선시키려 하는 그들의 입장을 명백히 노출시켰음.

○ 우리측이 이번 회담에서 쌍방이 제시한 합의서안을 놓고 차이점을 좁히기 위한 토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서

- 북측은 쌍방 합의서안을 실무회의에 넘겨 거기서 토의·조정하게 하자고 했는 바

- 이는 남북경제회담을 실무접촉 수준으로 사실상 격하시키고 실질적인 토의 진전을 필요에 따라 지연시킬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해 놓으려는 의도인 것으로 평가됨.
- o 우리측의 거둬들인 무연탄 30만톤 구입제의를 북측이 거부한 것은 남북간의 물자교류의 조기실현이 남북간의 산업발전수준에 있어서 그들의 열위를 노출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됨.

제5차 남북경제회담 결과보고

1985. 11. 20.

1. 일반사항

가. 일 시 : 1985년 11월 20일 (수) 10:00 - 12:45

나. 장 소 :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

다. 참석자

우 리 측	북 측
<p>수석대표: 김기환 (해외협력위원회 기획단장)</p> <p>대표: 임인택 (상공부 제2차관보) 구본태 (국토통일원 연구부장) 신봉식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이사) 김인준 (대한상공회의소 전무이사) 노진식 (한국무역협회 전무이사) 임병석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상임이사)</p> <p>수행원: 손종수, 한수웅, 윤 영</p>	<p>단장: 이성록 (무역부 부부장)</p> <p>대표: 계형명 (채취공업위원회 참사) 한영읍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 상부위원) 허항찬 (조선대외무역협조총회사 부사장) 이진식 (금속공업부 국장) 손종철 (무역경제연구소 부소장) 김해룡 (조선광명연합회사 부사장)</p> <p>수행원: 김광수 외 5명</p>

2. 회의내용

가. 회의 진행경과

- 우리측은 지난 제4차 회담에서 쌍방이 제시한 합의서 초안 가운데 쌍방간에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는 다음 7개항의 문제에 대한 의견조정을 끝낸 후 이를 문안조정을 위한 실무회담에 넘길것을 촉구하였음.

— < 우리측이 제기한 7개항 > —

- | | |
|---------------|------------|
| - 합의서 명칭 | - 경제협력 대상 |
| - 사업추진원칙 | - 공동위원회 기능 |
| - 교류대상품목 | - 분과위원회 수 |
| - 거래방식 및 결제은행 | |

- 이에 대해 북측은 우리측이 제기한 7개항중 합의서 명칭, 사업추진원칙, 교류대상품목, 분과위원회 수와 이외에 합의서 서명시 최고책임자로부터의 권한위임 문제와 서명자 호칭문제(국호사용 여부)를 제기하였음.
- 이에 따라 쌍방은 우리측이 제기한 7개항과 북측이 제기한 2개항을 포함, 9개항을 토의할 것에 합의하고 이중 명칭문제, 사업추진원칙 문제, 교류대상품목 명시문제 등 3개항에 대한 토의가 진행되었으나 아무런 합의도 이룩하지 못했음.
- 우리측은 오후 회의를 속개, 나머지 6개항의 문제에 대한 토의를 계속하자고 했으나 북측이 회담종결을 주장함으로써 6개항의 문제에 대해서는 토의를 하지 못한채 차기회담으로 넘겼음.

나. 주요 토의내용

○ 합의서 명칭 문제

- 우리측은 「남북간 물자교류 및 경제협력 추진과 부총리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경제협력 공동위원회 설치에 관한 합의서」로 하자고 한데 대해, 북측은 「북과 남사이의 경제협력 및 상품교류의 실현과 부총리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경제협조 공동위원회 구성에 관한 합의서」로 하자고 주장하였음.
- 우리측이 「물자교류」를 「상품교류」로 해도 좋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측은 표기순서에 있어 경제협력을 상품교류앞에 명시할 것과 공동기구 명칭에 대한 그들의 주장을 고집함으로써, 이 문제토의는 일단 보류하기로 하였음.

○ 원칙문제

- 우리측은 합의서 전문에 경제적 유대회복, 민족의 번영, 평화통일에 기여 등 물자교류와 경제협력의 목적과 함께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통일3원칙도 전문에 넣을 수 있다는 신축성있는 태도를 표시했음.
- 이에 대해 북측은 원칙문제를 합의서 첫 조문에 명백히 규정하자고 주장, 이 문제에 대한 토의 역시 보류기로 하였음.

○ 교류품목 문제

- 우리측이 제1, 2차 회담에서 쌍방이 제시한 품목 중 일치된 품목을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주장한데 반해, 북측은 교류품목을 합의서

에 명기하는 것은 교류를 제한하는 인상을 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입장을 고집함으로써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였음.

○ 무연탄 구입 문제

우리측이 제시한 무연탄 30만톤과 우리측의 철강재 등을 등가교환방식으로 시범적 물물교환을 하자는 제의에 대해서 북측은 답변을 회피하였음.

3. 쌍방 합의사항

- 우리측은 제6차 회담을 금년안에 개최하자고 하였으나 북측은 12월이 바쁘다는 이유를 내세워 1986년 1월 22일(수)에 개최하자고 주장, 이에 합의하였음.

4. 분석·평가

- 북측은 제5차 회담에서 보인 다음 몇가지의 태도로 보아 현시점에서는 경제 회담을 진전시키지 않으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합의서 명칭문제와 사업의 원칙문제 등에서 우리측이 북측의 주장을 일부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의견접근에 있어 하등의 융통성을 보이지 않고 합의를 보류하자고 한 점
 - 우리측이 토의하지 않은 나머지 6개항의 의견차이를 좁히기 위해 오후에도 회담을 갖자고 한데 대해 북측이 이를 거부하고 회담의 종결을 주장한 점
 - 제6차 경제회담을 우리측은 12월중에 개최할 것을 제의한데 대해 북측은 1986년 1월 22일로 늦추어 제의한 점

- 북측이 이같이 경제회담의 진전을 지연시키려는 이유는
 - 남북경제 교류와 협력의 조기실현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 그들이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국회회담 예비접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회담을 진전시키는 것은 정치회담을 우선시키려는 그들의 대화입장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됨.
- 북측이 합의서 서명에 있어 남북 쌍방의 국호를 사용하지 말자고 요구한 것은 한반도에 두개의 국가가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들의 기존 입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북측이 차기회담을 1986년 1월 22일로 제의한 것은 내년도 「팀스피리트」 훈련을 구실로 경제회담 마저도 지연시키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임.

南北經濟會談(1984—1985) 結果報告(綜合)

發 行 日：1993年 9月 14日

發 行 處：統一院 南北會談事務局

印 刷 所：(株) 盛 林 文 化

